

대구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가단12082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경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묵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141,074,046원에 대하여 2023.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관리업, 레저사업(목욕장, 헬스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0. 25.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D 지상 건물 중 2, 3층 부분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72,1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7. 7. 19.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7년 제517호로 ‘2015. 12. 30. 178,057,000원을 2017. 9. 20.까지 변제하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11. 17.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7. 12. 28.인 약속어음과 액면금 130,000,000원, 지급기일 2018. 1. 26.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15.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157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78,0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제9호증의2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 8호증, 제11호증의1, 2, 4, 제12, 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178,057,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 피고는 2015. 11. 18.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대구 달서구 D 지상 건물 신축 설비에 대한 1,375,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②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채무확인서와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7. 7. 10. 원고에게 178,057,000원을 2017. 9. 20.까지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17. 7. 19.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위 채무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변제기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기 이후인 2017. 11. 17.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전 자신의 주식을 G 등에게 양도하였다.
- ④ 피고는 2017. 11. 22., 같은 해 12. 1. 원고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명세서’를 문자메시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메일로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 ⑤ 2015. 1. 1.부터 2018. 11. 8.까지 피고 계좌와 소외 회사 계좌 사이의 다액의 거래내역이 발견된다.
- ⑥ 피고는 202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20. 9. 28.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하였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면제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H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20. 12. 17. 20,000,000원, 2021. 1. 6. 20,016,9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면제하였다.

2) 판단

H는 채무자,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2017. 7. 19.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7년 제516호로 ‘2015. 8. 31. 39,702,000원을 2017. 9. 20.까지 변제하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와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I가 원고에게 2020. 12. 17. 20,000,000원, 2021. 1. 6. 20,016,9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1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에 대한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20. 7. 28.부터 2022. 3. 3.까지 원고에게 총 155,828,5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각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 등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원고에게 2020. 7. 28. 2,000,000원, 같은 해 8. 5. 15,000,000원, 같은 해 8. 20. 30,000,000원, 2021. 6. 24. 3,300,000원, 같은 해 8. 25. 630,000원, 같은 해 10. 1. 4,898,500원, 같은 해 10. 14. 50,000,000원, 2022. 3. 3.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각 변제금을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라서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충당하면 2022. 3. 3. 현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원금 잔액은 141,074,04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1,074,046원과 이에 대한 2022.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1,074,046원과 2022.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6. 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595,926원[= 141,074,046원 × 0.15 × (1 + 94/366)]을 합한
167,669,97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0,000,000원과 그 중 원금 141,074,04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

